

##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
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'21.3.29.)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54호('21.3.30.)로 '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'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-183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'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24일  
서울특별시장

### 1. 대상지(변경)

구분	자치구	명칭(가칭)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노원구	상계3	상계동 71-183번지 일대	104,000	·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
변경	노원구	상계3	상계동 71-183번지 일대	121,862.06	

### 2. 권리산정기준일(변경)

구분	권리산정기준일	면적(㎡)	비고
기정	2020.09.21.	104,000	· 구역계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
변경	2020.09.21.(기존 구역)	101,564.5744	
	2023.08.24.(추가 구역)	20,297.4856	

### 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###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(변경 없음)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-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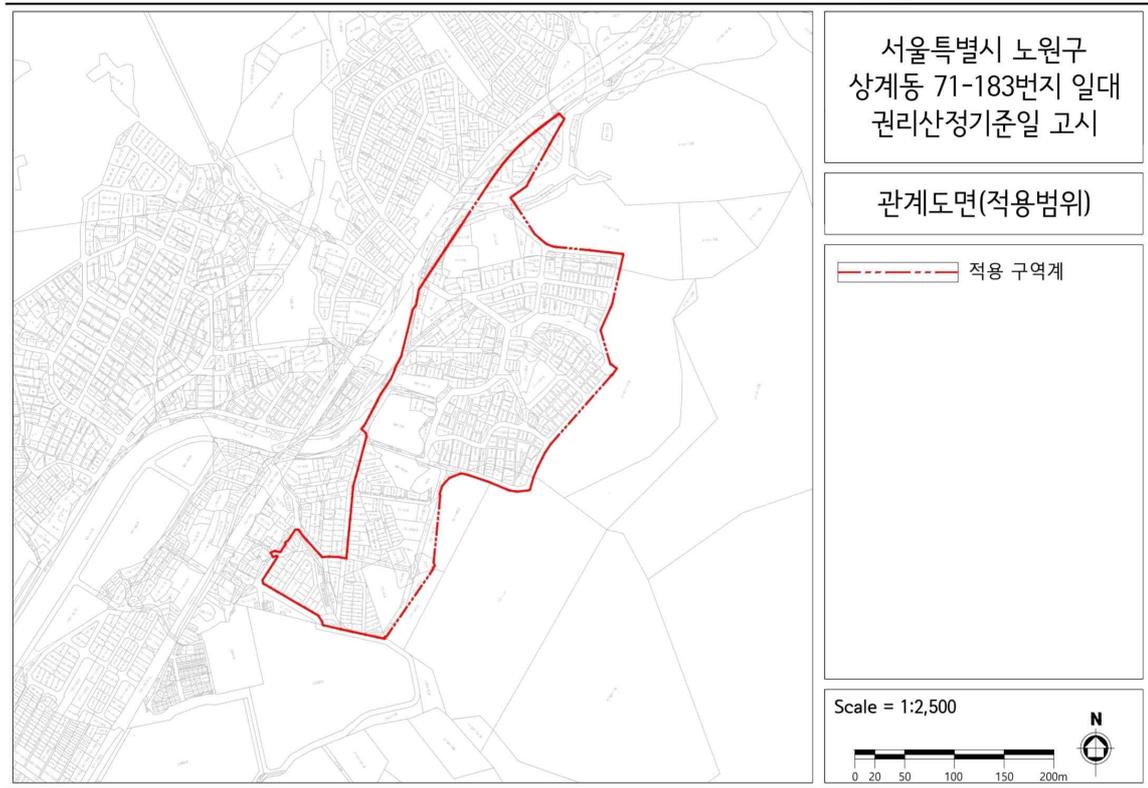
### 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### 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22) 또는 노원구 재건축사업과(☎02-2116-39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본 고시는 향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-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

■ 관계도면

- 노원구 상계동 71-183번지 일대
- 기정



- 변경

